

#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

(윤기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9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1. 19.

발 의 자 : 윤기배 의원

김지만 의원

김재우 의원

이시복 의원

이진련 의원

윤영애 의원

장상수 의원

전경원 의원

황순자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가.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 성범죄”란 카메라나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·소지하거나,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·협박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·교직원 교육
2.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자료의 활용
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·지원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예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·대응 교육
2.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·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
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**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교직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지원
2.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
3.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범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##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

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, 전보,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~ ⑪ (생략)